



: 2020-11-11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206309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은혜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서현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4가합5768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24.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8,603,300원 및 그 중,

- 1) 291,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14,816,6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3) 2,186,6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39,223,200원 및 그 중,

- 1) 23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5,223,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321,965,186원 및 그 중,

- 1) 286,556,01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32,250,0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3,159,16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가.의 1), 나.의 1), 다.의 1)항의 각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¹⁾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1,600,000원, 원고 B에게 234,000,000원, 원고 C에게 286,556,0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3. 3. 6. 임기 3년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 주주들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1) 2012년경 G는 피고 회사 주식 97,500주를, H는 같은 주식 59,007주를, I은 같은 주식 38,493주를 각 보유하여 G, H, I(이하 'G 등 3인'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 발행주

1) 청구취지 가.의 2)3)항, 나.의 2)항, 다.의 2)3)항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가.의 1)항, 나.의 1)항, 다.의 1)항을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가.의 1)항, 나.의 1)항, 다.의 1)항 부분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식 195,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주식 보유현황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2) G 등 3인은 2012. 8. 6.경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85%에 해당하는 165,750주²⁾를 양도대금 합계 16억 5,750만 원에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G 등 3인과 E은 2012. 11. 1.경 양도대금을 합계 4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 회사는 2014. 2. 13. 10:00 피고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내이사인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3, 63, 67,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임기 만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원고들 전부)

1)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① 내지 ⑤항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인 2014. 3.부터 원고들의 임기 만료 무렵인 2016. 2. 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에게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2) G 보유 주식 중 70,200주, H 보유 주식 중 58,032주, I 보유 주식 중 37,518주를 합산한 것이다.



위 기간에 대한 보수 또는 그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91,600,000 원, 원고 B에게 234,000,000원, 원고 C에게 27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 회사 주식 중 85%를 보유하는 E에게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되어 그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록에는 G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에 규정된 2주의 소집통지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G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K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 설령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C의 퇴직금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2012. 10. 1.부터 2014. 2. 13.까지 발생한 퇴직금 합계 12,555,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기 만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제2의 가.1)①항 주장]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도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상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인 E이 피고 회사 주식 165,750주(보유비율 8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4. 2. 7.자 주주명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E이 피고 회사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자를 가리는 적법한 주주명



부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E이 주주명부상 주주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 3인이다.

(나) 또한 E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등 3인과 E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변경합의서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 E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G 등 3인이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작출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 역시 G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E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기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E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주주 전원인 G 등 3인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위 주주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상 소집통지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제2의 가.1)②항 주장]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실제의 소집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4, 1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정관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G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4. 2. 13. 당시 해외(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출장을 간 상태였던 사실, ④ G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직원인 K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있어 피고 회사 대표이사 G가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의장으로 참석하였다고 기재한 위법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G와 E 사이의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G는 국내에 있던 H와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상의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를 지시한 점, ② G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4. 2. 12. K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K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G의 대리인 K을 비롯하여 나머지 주주명부 상의 주주들이 전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던 점, ④ 이 사건 주주총회가 종료된 당일 오후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취임승낙서, 위임장,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등 법인등기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기신청을 마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을 한 이상 1인 주주의 출석 및 의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총회를 주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의사록 일부 허위 기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미준수로 위법하다는 주장[제2의 가.1)③항 주장]

(1) 관련 법리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등 참조).

(2) 판단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G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K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주총회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제2의 가.1)④항 주장]

위 다)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G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K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제2의 가.1)⑤항 주장]

(1) 관련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2014. 2. 12. K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G의 대리인으로 G의 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K이 위 위임장을 지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국내에 있던 H 등이 준비한 점, H 등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G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 H 등이 주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K이 G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H 등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바, 결국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G의 K에 대한 의결권 위임의 사실 및 K의 대리인 자격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K의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2014. 2. 13. 위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 49570 판결 참조).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6, 11,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년 1월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G와 사내이사 E 사이에 회사 운영 및 피고 회사 주식 양도 문제 등으로 상당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에게 정당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2014. 2. 7. E과 함께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점, ③ 실제로 E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2014. 2.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



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취임에 승낙하는 등 E의 행위에 동조한 점, ④ 원고 A, C은 2012. 8. 10. E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E과 피고 회사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는 2014. 2.경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에서 직위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는 상법상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2014. 2. 13. 위 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C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3)(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 2020-11-11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최승원

 판사 최응영